제317회 임시회
2013. 1. 23.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3년 1월 14일

○ 회부일자 : 2013년 1월 15일

3. 제안이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2. 7. 1 법적 지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신설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을 개정하여 현행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원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원을 구성코자 함

4. 주요내용

○ 조합 구성원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안 제3조)

○ 현행 19명인 조합의 위원수를 20명으로 조정(안 제6조 제2항)

- 시·도의 기획업무 담당실장(17명)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담당국장(1명)
- 행정안전부장관이 추천하는 지방재정전문가(2명)

5. 검토의견

가. 기금 및 조합의 개요

○ 지역상생발전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수도권 3개 지자체(서울·경기·인천)의 지방소비세 수입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방자치단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0년 5월 설립되었음

○ 기금은 3개 지자체별로 지방소비세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분기말에 납입하면 16개 지방자치단체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해당 연도 출연금이 실제 납입된 지방소비세액과 다른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6월말까지 정산토록 하고 있음

※ 연도별·자치단체별 기금배정현황 붙임 '참고자료' 참조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은「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원으로 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위탁함에 따라 조합장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맡고 있음

나. 규약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7조에 의거 조합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동 개정안은 2012년 7월 1일자로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주용 내용은 조합의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에 '세종특별자치시'를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현행 19명인 조합의 위원을 1명이 증원된 20명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지역상생발전기금 배분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최종배분액	2011년 최종배분액	2012년 배분계획	2013년 배분계획	비고
서울특별시	10,712	11,528	11,443	11,849	
부산광역시	14,098	14,935	15,147	15,351	
대구광역시	33,182	29,923	32,204	32,158	
인천광역시	9,388	9,769	10,129	10,125	
광주광역시	31,704	32,865	33,878	33,830	
대전광역시	28,103	28,560	28,428	28,400	
울산광역시	29,396	32,486	29,856	29,813	
경 기 도	10,712	11,666	11,515	11,983	
강 원 도	19,392	23,162	26,414	27,998	
충청북도	18,807 (6.1%)	23,721 (7.2%)	19,652 (5.9%)	20,641 (6.0%)	
충청남도	13,913	15,299	14,928	15,625	
전라북도	14,898	17,467	16,496	17,485	
전라남도	23,301	25,219	28,899	30,633	
경상북도	23,393	25,531	25,132	26,189	
경상남도	17,607	17,605	18,838	19,233	
제주특별자치도	9,203	9,889	9,988	10,247	
인센티브재원	0	1,000	1,000	0	
조합운영경비	90	100	100	230	
합 계	307,896	330,725	334,048	341,792	